◉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3-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연임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규정 신설(안 제3장제1절 및 제2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연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함.

다. 휴직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20조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mirrdra@korea.kr
- 팩스 : (02)6320-0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52, 0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